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01
----------	-----

2015년 6월 26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5년 6월 1일, 한명희 의원 외 21명  
나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3일  
다. 상정일자 : 제26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15년 6월 26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한명희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아리수 음수대(이하 “음수대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있음.

금년 상반기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마무리됨에 따라 서울의 수돗물은 세계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정수기물이나 생수에 비해서도 더 안전적이고 친환경적이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

및 음용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공립 유치원 등에 음수대를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.

또한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음수대 설치 대상에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을 추가함(안 제6조제1항제1호)
- 음수대 설치 대상에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함(안 제6조제1항제2호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(안 제6조, 제7조, 제9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,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,  
「유아교육법」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부서와 협의 완료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(수석전문위원 : 김 선 희)

### 가. 개요

- 한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1) 교육시설 음수대 설치 확대(안 제6조)

-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학교, 공공기관 등에 음수대를 설치<sup>1)</sup>하고 있고 음수대 설치, 청소 등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('05.1.2 시행)한 바 있으며, 현행 조례에서 음수대 설치 대상 중 교육시설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만 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정규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해주고 있는 바,

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시설 내 음수대 설치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<sup>2)</sup>을 음수대 설치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(안 제6조제1항).

- 그리고 서울의 수돗물 수질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부정

1) '14년말 기준 1,623개소, 18,069대가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음

2) '15년 현재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, 1개소는 음수대를 기설치하였음

적 인식은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유년기의 습관이 평생 간다는 점에서 유년기부터 수도물 음용 습관을 갖게 함으로써 수도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안과 같이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음수대를 설치<sup>3)</sup>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시도로 보임(안 제6조제2항).

실제 평생교육시설(14개소) 1개소와 국공립 유치원(185개소) 85개소는 동 조례 제정 이전에 시범사업 형태로 음수대를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어, 이들 대상을 조례에 규정하여 연차적인 음수대 설치와 제대로 된 유지관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.

- 한편, 동 조례 개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(13개소)과 국공립 유치원(100개소)에 음수대를 설치하는 경우 총 5억 80백만원<sup>4)</sup>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향후 “음수대 설치사업”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임.

〈조례 개정에 따른 연차별 음수대 설치 비용〉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총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평생교육시설	120	18	18	28	28	28
국공립 어린이집	460	92	92	92	92	92
합 계	580	110	110	120	120	120

## 2) 용어 정비 등

-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을 준용하여 “손료”를 “구경별기본요금”, “시설분담금”을 “원인자부담금”으로 하며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“실비”를 “실제비용”, “산정방식”을 “계산방식”으로 하는 등 일부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.

3)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185개소 중 병설 유치원 85개소는 이미 해당 초등학교와 더불어 음수대가 시범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으므로 실제 설치 대상은 100개소임

# 관계 법령

## 「초·중등교육법」

### 제2조(학교의 종류)

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## 「평생교육법」

### 제31조(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)

①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.

다만,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,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교원의 복무·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·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④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·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

⑤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·절차, 입학자격,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·절차,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⑦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,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,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,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. 다만,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·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## 「유아교육법」

제7조 (유치원의 구분)

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립유치원 : 국가가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
2. 공립유치원 :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(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)
3. 사립유치원 : 법인 또는 사인(私人)이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2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

제6조제2항 중 “내·외부”를 “내부·외부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냉·온”을 “냉온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설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 설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교육 시설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20px;">〈신 설〉</p> <p>2. 공공기관의 민원실 또는 복도 등 공용 공간</p> <p>3. 공원, 광장,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의 주요 지점</p> <p>4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음수대 설치를 위하여 시장은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<u>내·외부</u> 배관을 확인하고 노후 및 직결 급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귀속 및 비용부담) ① (생략)</p> <p>②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를 위한 비용은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 예산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설치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</p> <p>2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</p> <p>3. ----- ---</p> <p>4. ----- -----</p> <p>5.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<u>내부·외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7조(귀속 및 비용부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 <u>서울특별시</u>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관리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 중에서 <u>냉·온</u> 기능, 수압 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음수대로서의 기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교체,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 략)</p>	<p>제9조(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냉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